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「지방세법」개정 (법률 제12153호, 2014.1.1)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「지방세법」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규정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변경(안 제9조 및 제10조)

○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·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「지방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 신설(안 제11조 신설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세법」제74조, 제84조의2, 제84조의3, 제92조, 제103조의3, 제103조의20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.

다. 입법예고 : 의견없음. ('14. 11. 11～11. 30)

라.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(별첨)

마.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5. 검토의견

❍ 본 개정조례은

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조례일부 개정안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하는 것으로

❍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을 일부개정 및 신설하여 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